

## 1. 지적유형(제목) : 부당대출 및 채권보전조치 미이행

## 2. 제재대상사실

□ 「보험업법」 제104조(자산운용의 원칙)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, 「보험업법」 제17조(내부통제기준 등)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「내부통제기준」 제28조(법규 및 사규 준수)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, 감독 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

동 기준 제43조(자산운용)에 의하면 대출, 투자 등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규 및 사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과 제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·점검 하여야 하며,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자산운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

(주)○○○ 공동 대표이사였던 ○○○ 및 ○○○(주)의 감사 ○○○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경영진인 ○○○ 前 대표이사 및 ○○○ 前 전무이사의 지시로 회사 대출규정상 담보 대상이 아닌 미등기 상태의 주상복합건물중 일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○○○ 및 ○○○에게 각각 5억 원 및 8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였으며

이후 위 대출의 만기 연장 시 동 상가가 이미 준공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하여 담보물 확인 및 근저당 설정 등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기를 연장한 사실이 있음

### 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-
임 원	문책경고 상당: 1명, 견책 상당 : 1명
직 원	-

#### 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17조(내부통제기준 등)
2. 「보험업법」 제104조(자산운용의 원칙)
3. 사규 「내부통제기준」 제28조(법규 및 사규 준수), 제43조(자산 운용)
4. 사규 「대출규정」 제58조(담보 부동산), 제59조(저당권설정 및 공동담보)